
2026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모안내서

2026. 7.



보건복지부
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

I

시범사업 개요

□ [사업명]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

□ 추진배경

- (이용자) 초고령화,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수요 급증* 및 욕구 다각화**
→ 現 인력의존적 제공방식으로는 고품질 서비스 확충에 한계

* (장기요양보험 수급자) ('20) 85.8만명 → ('22) 101.9만명 → ('22) 116.5만명('24, 건보공단)

** (돌봄서비스 개선 필요사항) '서비스 내용 다양화' 응답률 2위(25.7%)('24, 보사연)

- (제공기관) 서비스 내 新기술 도입 의지*는 있으나, 기술 도입을 위한 예산·역량·정보 부족** 등으로 제공방식 혁신 정체

* (서비스 기술 활성화 필요성) '긍정' 응답률 49.7% / (서비스 기술 활성화 과정의 어려움) 디지털 전환추진 예산 부족(46.9%), 기관 및 인력의 역량·정보 부족(14.4%) ('24, 복지부)

- (기업) 돌봄기술은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테스트 기회·비용 부족으로 효과성 검증이 어려워 시장진입 곤란, 기술개발 유인도 저하

※ (복지기술 간담회, '23.8.) 복지기술 이용자는 대부분 취약계층으로 B2C 판매가 어려워, 초기진입 및 현장보급이 어렵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한 유인도 저하

□ 추진근거

- [국정목표 4] 기본이 튼튼한 사회

▶ ㉠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

- (고령친화산업 활성화) 돌봄인력 부족 대응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AI·IoT 기술 활용 스마트 돌봄 서비스 확충 및 리빙랩 등 R&D·사업화 기반 마련

□ 추진방향

- ① **(삶의 질 제고)** 다각적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**국민 삶의 질 제고** 추진
- ② **(실증 및 확산)** 개발된 기술을 서비스에 활용하도록 지원, **돌봄기술 초기시장 형성** 촉진
- ③ **(지역 자율형)** **지자체**가 주민 서비스 욕구 등 **지역적 특성**을 살린 서비스를 **직접 개발·운영**

- **[사업목적]** 광역자치단체 대상, **新기술***을 활용한 사회서비스의 시범운영 기회(test-bed) 제공 ⇨ **신규 서비스 효과성 확인** 및 **우수사례 연계·확산**

* **(주요기술)** 인공지능(AI), 사물인터넷(IoT), 빅데이터, 증강·가상현실(AR·VR), 로봇틱스 등

- **[예산규모]** 총예산 **14.3억원**(국비 10억원 + 지방비 4.3억원) * 국비 보조율 70% 가정

- **(교부 방식)**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

- 국비 보조율*: 서울 50%, 서울 이외 지역 70%, 성장촉진지역 80%

*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1] 99번

◆ **(유의사항)** 지방비 매칭 사업 ⇨ 최종선정 후 빠른 시일 내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, 신청 전 예산실과의 협의통해 성립 전 예산 사용 또는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 필요

□ 기대효과

① 이용자	② 제공기관	③ 기술기업
다각적 돌봄욕구 충족 통해 삶의 질 제고	신규고용 창출 및 제공방식 혁신	효과성 검증 후 국내외 시장 진출

II 지원 개요

- **[지원내용]** 시·도 대상 자유공모 통해 과제 선정 ⇨ 서비스 제공비용 지원
 - **(지원규모)** 국비 기준 총 10억원 ⇨ 각 과제당 1~2억원 지원 예정
 - ※ 단 최종선정 과제 수, 과제별 지원 금액 등은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**[지원기간]** 최종 선정일 ~ '26. 12. 31. (약 5개월)
 - ※ '26년 12월 중 추진실적 성과평가 착수 예정(평가개요 및 협조요청사항 향후 별도 안내) ⇨ 평가결과 정확성 확보위해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자료제출, 설문조사 응답 등 적극협조 필요
- **(수행기간)** 4개월 이상 실제 서비스 제공 권고

III 공모 계획

- **[공모방식]** 자유공모* ⇨ 5~10개 지원과제 선정 예정
 - * 신청주체가 ▲실증과제, ▲전달체계, ▲예산집행계획 등을 모두 자율적으로 설계하고, 보건복지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발표·시연 등을 기반으로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
- **[공 모 명]** 「2026년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」 3차 공고
- **[공모과제]** 新기술·제품*을 활용함으로써, ❶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거나 ❷서비스 제공과정을 효율화할 수 있는 신규 사회서비스 모델**
 - * (요건) 실제 주민에게 제공되는 점을 감안, 기술성숙도(TRL) 8단계 이상이 원칙
 - ** (요건) 평가 데이터의 타당성·신뢰성 확보위해 실제 서비스 이용자 100명~200명 이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 필요(200명 이상 권고)

□ **[신청주체]** 과제수행 컨소시엄을 구성한 광역자치단체(이하 “시·도”)

컨소시엄 관련사항

- **(구성목적)** 지역 내 서비스 자원을 최대한 활용, 주민 수요에 적합한 스마트 사회서비스를 설계·제공하는 민관 협업체계(기업 포함) 구축
- **(구성주체)** ①지자체, ②광역지원기관, ③기업, ④서비스 제공기관 등

구성주체	주요역할
시·도	사업 총괄 책임 기관 - 사업계획 승인, 공모 신청, 예산 교부 등 - 그 외 지원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 업무 총괄
시·군·구	행정 지원 기관 - 지역사회문제 발굴, 서비스 안내, 신청·접수 등 지원 - 지역사회 가용자원 관리·연계·조정 등 지원
광역지원기관 (시·도 사회서비스원 및 이에 준하는 기관)	실무 주관 기관 - 사업계획 설계 및 유관기관·인력 섭외 - 협업체계 내 소통 지원, 업무 조정 - 그 외 현황 모니터링, 실적 관리, 홍보 등 과제추진에 필요한 제반 실무
총괄 담당자 (Project Manager, PM)	- 컨소시엄 대내외적 소통 수행 - 공모 및 평가 시 대면심사 발표·시연 수행 - 현장방문 시 현황 보고 및 서비스 시연 총괄 - 서비스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
기업 * 기술성숙도(TRL) 8단계 이상 원칙	新기술 제공 기관 - 사업계획 설계 협조, 제품의 현장보급 및 관리, A/S 제공 - 사용자 매뉴얼 및 제공인력 교육 등 제공 - 데이터 수집·분석 및 성과평가 자료 제출 - 기술·제품 개선 및 사회서비스와의 연계 고도화
서비스 제공기관 (복수선정 가능) * 서비스 이용자 100명~200명 이상 필요	사회서비스 제공 기관 - 이용자 대상 실제 서비스 제공 - 이용자 응대, 현장 피드백 수집, 제공기록 관리 및 제출 - 제공인력 대상 사전교육 협조
그 외	대학, 정부출연연구기관, 지역혁신기관 등 시·도지사가 과제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관

- **(광역지원기관)** ①사회서비스 제공·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(시·도 사회서비스원) 또는 ②이와 유사한 수행역량을 보유하여 시·도지사가 실무 주관 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기관
- **(총괄 담당자)** 1인 지정 필수 ☞ 가급적 광역지원기관 소속 인력 지정을 권장하나, 지자체 여건에 따라 적정인력 자율지정 가능
- **(서비스 제공기관)** 지역 여건에 따라 복수 지정*도 가능

* **(서비스 이용자)** 이용자 수는 **최소요건**(총합 100명~200명 이상)을 충족하는 경우, 각 제공기관별로 분산 가능(예시: 동일 컨소시엄 내 기관A 이용자 30명, 기관B 이용자 70명인 경우 ☞ 이용자 수 총합 100명이므로 요건 충족)

□ **[신청절차]** 과제수행 컨소시엄 구성 → 사업계획서 등 필수서류 작성
→ 시·도가 접수기한 내 보건복지부로 공문 제출(필수서류 첨부)

○ **(신청방식)** 보건복지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대상, 전자문서*(공문)로 제출

* 전자문서 제목은 **"2026년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공모 신청"**으로 명시

※ 첨부파일 용량이 클 경우 담당자 온나라 메일로 제출(shchoi92@mail.go.kr)

□ **[공모 일정]** '26. 7. 1.(수) ~ '26. 7. 20.(월)

○ **(신청 기한)** '26. 7. 20.(월) 09:00 ~ 18:00 ※ 기한 엄수

- **(판정기준)**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온나라 문서 수신일시 기준

- **(유의사항)** 기한 전 또는 후에 제출된 건은 무효처리 예정으로 기한 엄수

※ PC 및 네트워크 상황 등에 따라 예상치 못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,
가급적 **마감일 전일까지** 제출하는 것을 권장

IV 제출 서류

구분	제출서류명	필수여부	양식
1	사업신청서 1부	○	붙임 1
2	사업계획서 1부	○	붙임 2
3	개인정보 수집·이용 제공 및 동의서 1부	○	붙임 3
4	자격요건 자가점검표* 1부	○	붙임 4
5	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중 1부	○	-
6	최근 1년 표준재무제표(날인본 표지 포함)	○	-
7	최근 1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	○	-
8	총괄책임자 재직증명서 1부	○	-
9	TRL 8단계 이상 기술 보유 증빙서류 1부	○	-
10	그 외 성과 증빙자료 등 기타 붙임자료	X	-

* 시·도는 신청 전,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사업 수행적격 여부를 사전검토하여야 함

** 최종선정 후에도 수행적격 여부 판정이 가능하며, 부적격 사유 발견 시 최종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

*** 복지부는 사업계획·추진내용·결과물 등에 대해 과제 수행 전·후 중복 유사성 검토를 시행할 수 있으며, 유사 목적의 정부지원 사업과 중복·유사성이 확인될 시 선정에 배제될 수 있음

V

선정 계획

□ 선정주체 및 절차

- (선정주체)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심사위원회* 구성

* 사회서비스 및 돌봄기술 분야 대상,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5~10인 이내 구성 예정

- (선정절차) 신청접수 → (1차)서류확인 → (2차)서면심사 → (3차)대면심사 → 선정*

* (조건부 선정) 필요시 조건부 선정 후, 사업계획서 보완정도에 따라 최종 선정여부 결정 가능

[1차] 서류확인: 수행적격성 평가

- (심사방식) 정상접수된 건에 한해 제출서류 상 자격적부 사전검토
 - (정상접수) ①기한 내 접수 완료, ②필수 서류 전부 제출
 - (자격기준) 국비 지원과제 수행자격 적부 심사



[2차] 서면심사: 과제후보군 선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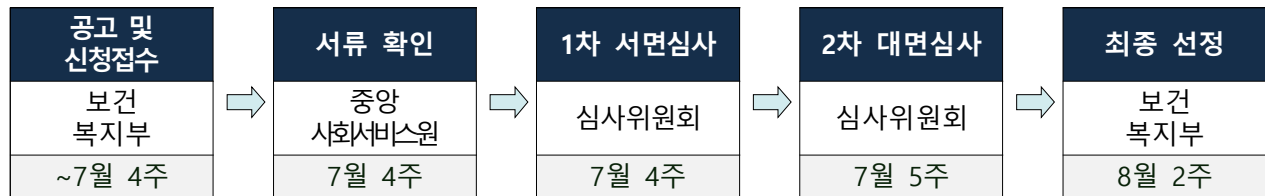
- (심사방식) 서면심사 통과과제 대상, 사업계획서 기반 대면평가 대상과제 선정
- (심사절차) 각 위원별 평가점수 합산(단, 최고·최저점 제외) 후 평균 도출
⇒ 고득점 순으로 대면심사 대상과제(최종 선정과제의 1.5배수 이내) 선정



[3차] 대면심사: 지원과제 최종선정

- (심사방식) 서면심사 통과과제 대상, PPT 대면발표*(10분 내외) 및 질의응답(15분 내외)을 거쳐 지원과제 선정
 - * 총괄책임자(PM) 발표가 원칙(그 외 인력이 발표 시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필요)
- (심사절차) 각 위원별 평가점수 합산(단, 최고·최저점 제외) 후 평균 도출
⇒ 고득점 순으로 지원과제 최종선정(단, 심사점수 70점 이상이어야 함)

□ 선정 일정[안]



- ※ 대면심사 일정·장소 등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중앙사회서비스원 누리집(www.kcpass.or.kr, 소통참여>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게시판)에 공지 예정
- ※ 상기 일정은 평가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□ 선정심사 기준[안]

○ 서류 확인

- 기관자격·서류구비·의무이행 등 정부 지원사업 수행자격의 적부^{참고}를 심사하여, 수행적격이 확인된 접수 건을 대상으로 1차 서면심사 진행

○ 1차 서면심사

- 사업계획서를 통해 제안과제의 정책 부합성, 추진계획의 구체성, 기술 경쟁력, 신규 서비스의 효과성, 지속·확산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

○ 2차 대면심사

- 발표·시연을 통해 기술 활용 서비스 모델의 실제 작동 가능성, 컨소시엄의 과제수행 준비도 및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총괄 담당자가 담당 과제를 발표하는 것이 원칙*

* 총괄 담당자가 과제발표를 할 수 없는 경우,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구체적이고 타당한 발표자 변경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

- 공정한 평가를 위해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각 과제별로 동일하게 부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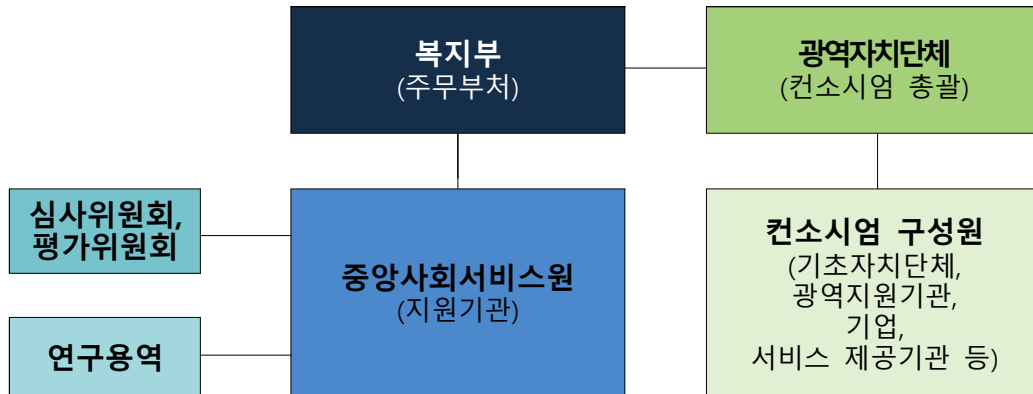
○ 평가항목 및 배점

평가분야	주요 평가내용	배점
1. 사업계획 적정성	▶ 제안과제의 부합성 및 수행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평가	20
제안과제의 정책부합성	-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과의 연계성 - 지역 내 사회서비스 욕구진단 및 자원분석의 적절성	6
수행계획의 실현가능성	- 추진체계, 인력배치 및 과업분장, 추진일정, 예산편성의 타당성 - 컨소시엄의 과제수행 관련 역량 및 경험, 추진의지	14
2. 기술 경쟁력	▶ 서비스에 활용될 기술의 우수성·서비스 적합성·안전성을 평가	26
기술의 우수성	활용기술의 효과성 및 혁신성	10
기술의 서비스 적합성	- 활용기술의 지역 내 사회서비스 욕구, 자원, 전달체계 부합성 - 기술의 성숙도, 편의성 등 현장적용 가능성	10
기술의 안전성	기밀보안 체계, 개인정보 보호대책, 안전성 확보방안의 적정성	6
3. 사회서비스 효과성	▶ 서비스 내 기술 도입 필요성과 서비스 모델의 타당성·우수성 평가	29
기술의 도입 필요성	기술도입 배경 타당성, 기술도입에 따른 기대효과의 구체성 등	7
서비스 모델의 타당성	서비스 대상자 요건설정의 적정성, 서비스 수단의 목적부합성, 지역 내 서비스 전달체계의 작동가능성 등	12
서비스 모델의 우수성	서비스 모델의 작동가능성, 지역사회 문제해결에의 기여가능성 등	10
4. 지속 확산 가능성	▶ 지원종료 후에도 서비스 모델이 지속·확산될 수 있는지를 평가	25
지원실적 평가 가능성	- 제시된 성과목표·지표의 타당성, 측정가능성, 도전성 - 성과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·활용 계획의 적정성 -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·현장방문 수행 등에 대한 협조의지	9
지속 가능성	- 기술 고도화 계획의 타당성 -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연계 등, 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위한 제도화 계획의 타당성 및 제도화 의지	12
확산 가능성	- 기술의 국내·외 확산 전략 보유여부 및 실현가능성 - 보도자료 배포, 홍보영상 제작 등 지원성과 자체활용 계획	4
총 계		100

VI

추진체계 및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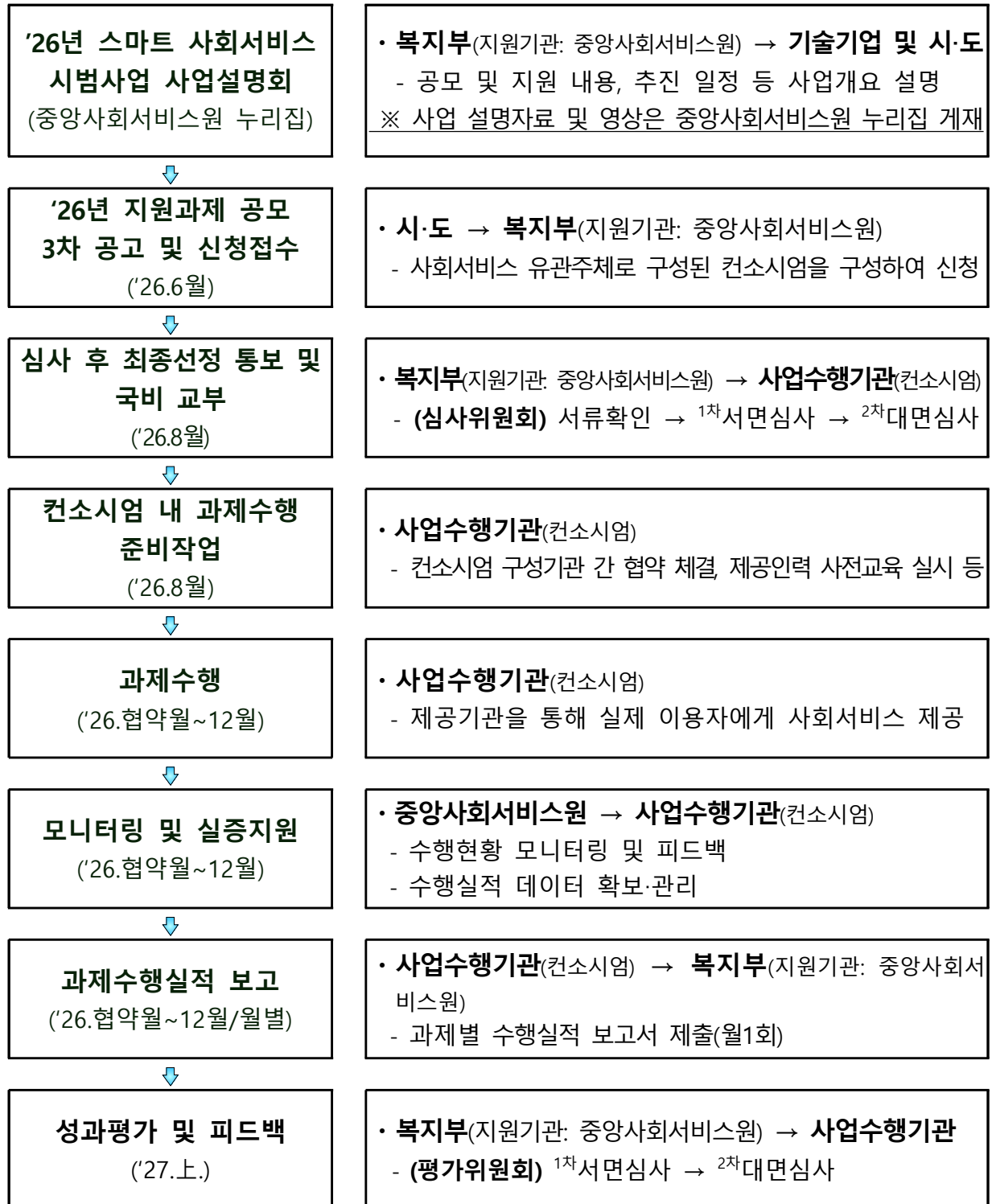
□ 추진체계



○ 추진주체별 주요 업무

주체	주요 업무
보건복지부 (주무부처)	○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○ 지원과제 공모 공고 및 접수, 선정 ○ 과제수행 점검(정기/수시) 및 관리 총괄 ○ 심사위원회,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○ 기타 사업추진 및 성과확산에 필요한 정책수립
중앙사회서비스원 (지원기관)	○ 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보고 ○ 지원과제 공모 공고 및 접수 지원 ○ 과제수행 점검(정기/수시) 및 관리 수행 ○ 심사위원회,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○ 기타 사업추진 및 성과확산에 필요한 업무지원
시범사업·지원과제 성과평가 연구용역	○ 평가계획 수립 및 보고 ○ 평가지표 지속 고도화 ○ 평가데이터 정기적 수집 및 관리 ○ 최종 성과평가보고서 작성, 사업·과제 개선의견 제언 ○ 기타 성과평가 및 성과확산에 필요한 업무지원
심사위원회	○ 과제심사 및 선정 의결
평가위원회	○ 성과평가 및 결과 의결
컨소시엄 (수행기관)	○ 신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지속 모니터링 ○ 과제 진행현황 보고, 개선 아이디어 제언 ○ 과제수행실적 데이터 제출 ○ 우수사례 홍보 등 협조 ○ 기타 과제수행을 위한 제반 업무

□ 추진절차



※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VII

기타 행정사항

- 공모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공모 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,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- 신청 기한 외에 접수된 경우, 기한 내에 접수되었으나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 대하여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시·도는 컨소시엄 구성원을 대상으로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4조(입찰무효) 등 관련법령 상 무효사유를 포함한 수행적격 여부^{붙임 4}를 사전검토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사업계획·추진내용·결과물 등에 대해 과제 수행 전·후 중복 유사성 검토를 시행할 수 있으며, 유사 목적의 정부지원 사업과 중복·유사성이 확인될 시 선정에 배제될 수 있습니다.
- 최종선정 후에도 컨소시엄 구성원의 참여 적격 여부 판정이 가능하며, 부적격 사유 발견 시 최종선정 무효 또는 취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 서류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,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제출된 내용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,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사업계획서 등 제출 문서는 보조사업자 신청을 위한 작성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- 최종선정된 시·도는 심사결과의 반영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수정·보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최종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과제를 추진하여야 합니다.
- 최종선정된 컨소시엄 구성원은 지원과정 중 또는 종료 후, 보건복지부 또는 보건복지부 의뢰에 의한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
 - ※ (예) 성과평가를 위해 자료제출 또는 현장방문을 요청받는 경우, 추진실적 홍보를 위해 관련 행사 참석 및 발표 등을 요청받는 경우
-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, 요구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.
 - ※ 외부누설로 인한 문제 야기 시, 누설자는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.
- 보조사업자 신청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, 사용권 또는 특허권 침해 및 기재사항 누락과 오류 등에 대한 책임은 광역지원기관(실무 주관 기관)에 있습니다.
-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규를 따릅니다.

★ 선정된 사업자는 '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' e나라도움(www.gosims.go.kr)을 통해 국고보조금 집행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관련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.

□ 관련 문의

담당자	연락처
보건복지부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	044-202-3245, 3247
	shchoi92@korea.kr
중앙사회서비스원 AI돌봄팀	02-2271-9887
	smart@kcpass.or.kr